

2003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80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1. 2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1. 3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2. 12. 2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대출 시기 및 한도액을 조정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시기 조정**
· 2002년까지 연2회 시행(2월, 9월) ⇒ 2003년도 수시
-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 **조정**

<당초>

규 모	종업원20인미만 자본금2억미만	종업원50인미만 자본금5억미만	종업원100인미만 자본금10억미만	종업원100인이상 자본금10억이상	비고
대출금액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변경>

구 모	종업원20인미만 자본금2억미만	종업원20인이상 자본금2억이상	비 고
대출금액	5천만원	1억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지원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사업으로
- 조성된 기금(8억원) 원금은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이차발생액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체결하여 지역중소기업체에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대출 시기를 완화하고 용자 한도금액의 중간 범위를 확대한 부분은 자금 필요 업체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며, 2003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2002년도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은?
- 답 : 3개업체 대출금액 95,000,000원에 대한 이차보전금(3%)으로 3/4분기까지 2,131,639원을 지원하였으며, 4/4분기까지 총 2,849,994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 : 이차보전금 지원금이 그렇게 된다면 기금집행액이 56,000,000원이 아니지 않느냐?
- 답 : 이차보전금 지원액만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기금의 집행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진출하여 집행하므로 특별회계에서 별도 결산을 함.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12.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